

국방부령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법무담당관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병 징계별목 변경에 따라 양정기준 등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군기교육 운영부대 단위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
군기교육 운영제대를 사단(여단을 포함한다), 전단, 비행단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이상으로 함

나. 병 징계양정기준 개정(안 별표2 개정)

병 징계별목을 다양화한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양정기준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2. 18. ~ 3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본문 중 “**별표 2.**”를 “**별표 2**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병에 대한 군기교육처분 운영제대) 「군인사법」 제5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군기교육기관 운영제대는 사단(여단을 포함한다), 전단, 비행단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이상으로 한다.

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		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,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 우	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	비행의 정도 가 가볍고 경 과실인 경우
1. 성실 의무	가. 직무태만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감봉	휴가단축	근신 ~ 견책
	나. 그밖의비	강등 ~ 군기교육	감봉 ~ 휴가단축	휴가단축	근신 ~ 견책

위반	행사실				
2. 복종의무 위반		강등	군기교육 ~ 감봉	감봉 ~ 근신	근신 ~ 견책
3.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	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감봉	휴가단축	근신 ~ 견책
4. 공정의무 위반	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감봉	휴가단축 ~ 근신	근신 ~ 견책
5. 비밀엄수의무 위반	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감봉	휴가단축	근신 ~ 견책
6. 청렴의무 위반		강등	군기교육	휴가단축	근신 ~ 견책
7.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		강등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휴가단축	근신 ~ 견책
8. 품위 유지 의무 위반	가. 성희롱,	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		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	
	성폭력	강등 ~ 군기교육		휴가단축 ~ 근신	
	나. 그 밖의 비행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휴가단축	휴가단축 ~ 근신	근신 ~ 견책

※ 비 고

1.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2. “성폭력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. 8. 5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병 징계양정기준 경과조치)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징계등 양정 기준) 「군인징계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(이하 “징계등”이라 한다)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징계등 양정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징계의 양정 기준	1.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징계심의대상자가 병(兵)인 경우: <u>별표 2. 다만,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.</u>	나. ----- ----- <u>별표 2 <단서 삭제>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청취 등) ① <u>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, 그 밖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u>	제4조(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청취 등) <u><삭제></u>
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의2(병에 대한 군기교육처분</u> <u>운영제대) 「군인사법」 제57조</u> <u>제2항제2호에 따른 군기교육기</u> <u>관 운영제대는 사단(여단을 포</u> <u>함한다), 전단, 비행단 및 이에</u> <u>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이상으</u> <u>로 한다.</u>
--	--